심사보고서

충청북도 환경분쟁조정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충청북도 환경분쟁조정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의안 번호 813

2025. 1. 24.(금) 건설환경소방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 출 자 : 충청북도지사

나. 제출일자 : 2025년 1월 10일

다. 회부일자 : 2025년 1월 14일

라. 상정일자 : 2025년 1월 22일

- 제423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2차 건설환경소방위원회 : 상정·의결

마. 주요내용

-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답변, 심사의결(원안가결)

2. 제안 설명 요지 (제안설명자 : 환경산림국장)

가. 제안이유

○ 주민의 건강피해조사를 "환경분쟁조정피해구제위원회"에서 통합·운영하 도록「환경분쟁조정법」이 「환경분쟁 조정 및 환경피해 구제 등에 관한 법률」로 전부개정('25. 1. 1. 시행)됨에 따라 이를 조례에 반영해 환경 오염피해 구제의 효율성과 신속성을 제고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조례의 제명을 변경함(안 명칭)
 - (기 존) 충청북도 환경분쟁조정에 관한 조례
 - (변 경) 충청북도 환경분쟁조정피해구제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 환경분쟁조정피해구제위원회 구성 및 운영 방법 등을 규정함 (안 제1조부터 제4조까지)
- 건강피해조사분과위원회 및 환경분쟁 조정·재정·중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방법 등을 규정함(안 제5조부터 제6조까지)
- 건강피해조사분과위원회 또는 환경분쟁 조정·재정·중재위원회에 안건 회부 절차를 규정함(안 제7조)
- 알선 또는 조정·재정·중재 등에 따른 수수료를 규정함(안 제9조)
- 공시송달 규정 신설함(안 제10조)

3. 검토보고 요지 (정법주 수석전문위원)

가. 조례개정의 필요성

- 본 전부개정조례안은 「환경분쟁 조정법」이 「환경분쟁 조정 및 환경 피해 구제 등에 관한 법률」로 전부개정 됨에 따라,
 - "충청북도 환경분쟁조정에 관한 조례"를 "충청북도 환경분쟁조정피 해구제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로 조례 제명을 변경,
 - "충청북도 환경분쟁조정위원회"를 "충청북도 환경분쟁조정피해구제 위원회"로 변경하고,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제도적 근거를 타당히 마련 함.
- 이에 상위법령에 저촉되는 사항은 없으며, 입법취지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됨

나. 조례내용의 정당성 및 법 적합성

- 상위법령인 「환경분쟁조정피해구제법('25. 1. 1.시행)」에 따라 전부 개정하여 충청북도 환경분쟁조정피해구제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운영 등에 관한 제도적 기반을 적합히 마련함.
- 조문의 주요내용을 보면
 - 안 제1조는 조례의 목적을 규정함.
 - 안 제2조는 「환경분쟁조정피해구제법」의 '위원회 구성'을 준용하여 규정함.
 - 안 제3조 및 제4조는 '충청북도환경분쟁피해구제위원회'설치운영,회의 소집 등의 전반을 규정함.
 - 안 제5조부터 제7조까지 "건강피해조사분과위원회" 및 "조정·재정· 중재위원회"의 구성·운영과 회부 절차 대해 규정함.
 - 안 제8조는 전문위원의 선정을 규정함.
 - 안 제9조부터 11조까지 위원회 납부 수수료, 공시송달 방법, 수당 등을 규정함.

다. 조례내용의 기술적인 사항

- 전부개정안은 총 11개의 조문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상위법령에 위 반되거나 조문 상호 간 상충되는 내용이 없이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 에 맞추어 정비함.
- 조례안 예고('24. 11. 8.~11. 28.)를 통해 도민 의견을 수렴함.

4. 검토의견

- 본 조례안은 「환경분쟁 조정법」이 「환경분쟁 조정 및 환경피해 구제 등에 관한 법률」로 전부개정 됨에 따라 "충청북도 환경분쟁 조정위원회"를 "충청북도 환경분쟁조정피해구제위원회"로 변경하고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입법 취지나 필요성이 시의적절하며 상위법령에 위반 또는 침해되는 사항 없이 목적에 맞게 적합한 내용을 규정함.
- 분과위원회의 경우 상위법령 상의 중앙위원회(100명 이내 구성) 기준을 감안한다면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되는 지방위원회의 규모를 감안 하여 적정 인원(9명 이상 15명 이내)으로 규정하였다고 사료됨.
 - ※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의 "시·도 환경분쟁조정피해구제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권고안 "은 분과위원회위원회 위원을 9명 이상 15명 이내로 구성하도록 규정

(관련: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 사무국-3552, 2024.8.19.)

- 본 전부개정 조례안은 충청북도의 조례 입법평가 결과를 반영하고, 자치법규 정비 기준에 맞게 조례를 일괄 정비하는 정당한 절차를 따름.
- 종합검토결과 본 조례안은 입법내용의 정당성 및 법 적합성 등 모든 요건을 충족하는 전부개정 조례안으로써 타당하다고 판단됨.

- 5.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 6. 토 론 요 지: "생략"
- 7. 심 사 결 과: "원안가결"
- 8. 소 수 의 견 요 지 : "없음"
- 9. 기타 필요한 사항: "없음"
- 10. 심사보고서 첨부서류
 - ○「충청북도 환경분쟁조정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의안번:	<u>र</u> ्	제813호	
의	결	년 월 일	
연월 '	일	(제 회)	

충청북도 환경분쟁조정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제 출 자	충 청 북 도 지 사	
제출연월일	2025년 1월 10일	

법무혁신담당관 심사를 마침

충청북도 환경분쟁조정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 안 번호 813

제출연월일: 2025년 1월 10일 제 출 자:충청북도지사

1. 제안사유

- 주민의 건강피해조사를 환경분쟁조정피해구제위원회에서 통합·운영하도록 「환경분쟁조정법」이「환경분쟁 조정 및 환경피해 구제 등에 관한 법률」 로 전부개정('25.1.1. 시행)됨에 따라 이를 조례에 반영하여 환경오염피해 구 제의 효율성과 신속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 불필요한 조항 정비 및 조문 수정을 통해 간결화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법률 제명이 「환경분쟁 조정 및 환경피해 구제 등에 관한 법률」로 변경됨에 따라 조례의 제명을 「충청북도 환경분쟁조정피해구제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로 변경함(안 제명)
- 환경분쟁조정피해구제위원회 구성 및 운영 방법 등(안 제2조~제4조)
- 건강피해조사분과위원회 및 환경분쟁 조정·재정·중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방법 등(안 제5조~제6조)
- 건강피해조사분과위원회 또는 환경분쟁 조정·재정·중재위원회에안건 회부 절차 (안 제7조)
- 알선 또는 조정·재정·중재 등에 따른 수수료(안 제9조)
- 공시송달 규정 신설(안 제10조)

3. 의안전문 : 붙임

4. 신ㆍ구조문 대비표 : 생략

5. 관계법령 발췌 : 붙임

6. 비용추계서 : 붙임

충청북도 환경분쟁조정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충청북도 환경분쟁조정에 관한 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충청북도 환경분쟁조정피해구제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환경분쟁 조정 및 환경피해 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25조제2항에 따라 충청북도 환경분쟁조정피해구제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위원회 구성) ① 「환경분쟁 조정 및 환경피해 구제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1항에 따른 충청북도 환경분쟁조정피해구제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환경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부지사, 부위원장은 환경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구장으로 한다.
 - ② 당연직 위원은 보건환경연구원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충청북도지사가 위촉한다. 이 경우 제2호에 해당하는 자가 3명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
 - 1. 1급부터 3급까지에 상당하는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으로 3년 이상 재직한 사람
 - 2. 판사 · 검사 또는 변호사로 6년 이상 재직한 사람
 - 3. 「고등교육법」 제2조 각 호의 학교나 연구기관에서 부교수 이상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職)에 재직한 사람
 - 4. 「의료법」 제77조에 따른 전문의 자격 취득 후 7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사람

- 5. 「보험업법」 제186에 따른 손해사정사 자격 취득 후 7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사람
- 6. 환경부, 국립환경과학원에서 환경보건 업무를 담당하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공무원
- 7. 환경 관계 업무에 10년 이상 종사한 사람
- 8. 환경보건, 환경분쟁 또는 환경피해구제 등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 ③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 ④ 제2항에 따라 위촉된 위원 중 임기가 끝난 위원은 후임자가 위촉될 때까지 계속 그 직무를 수행한다.
- ⑤ 제2항에 따른 위촉직 위원은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에 따라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한다. 다만, 해당 분야 특정성별의 전문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양성평등 업무 담당부서와 미리 협의한다.
- 제3조(위원회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수행한다.
 - ②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 ③ 위원회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과반수가 회의의 소집을 요구하는 때에는 위원장이 소집한다.
 - ④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⑤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려는 때에는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회의 일시·장소 및 안건을 각 위원에게 서면 또는 정보통신망(이메일, 문자등)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아니하다.
- 제4조(간사) ①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둔다.

- ② 간사는 환경분쟁조정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과장이 된다.
- 제5조(건강피해조사분과위원회) ①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건강피해조사분 과위원회(이하 "분과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9명 이상 15명 이내로 구성한다.
 - ② 분과위원회 위원장은 환경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국장으로 하며, 분과위원회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분과위원장이 분과위원회 위원 중에서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③ 분과위원회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회의에 전문위원, 조사관 등으로 하여금 회의에 참석하여 보고하게 할 수 있다.
 - ④ 분과위원회 의결, 회의소집 방법 등에 관해서는 제3조제3항부터 제5항 및 제4조를 준용한다.
 - ⑤ 분과위원회의 의결은 위원회의 의결로 본다.
- 제6조(조정·재정·중재위원회) ① 법 제47조제1항에 따라 구성되는 조정 위원회, 법 제57조제1항에 따라 구성되는 재정위원회 및 법 제68조제1항에 따라 구성되는 중재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의 위원장이 지명한다.
 - ② 조정·재정·중재위원회 회의는 구성원 전원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구성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③ 조정ㆍ재정ㆍ중재위원회 회의소집 방법에 관하여는 제3조제5항을 준용한다.
- 제7조(회부 절차 등) ① 분과위원회 및 조정·재정·중재위원회는 법 제24 조제1항에 따라 해당 안건을 회부하여 처리하게 하는 경우 회부하는 것 이 적절한지의 검토를 서로 요청할 수 있다.
 - ② 제1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경우 분과위원회 또는 조정·재정·중재위원 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야 한다.
 - 1. 건강피해조사 청원 수용 여부
 - 2. 당사자간 조정절차의 적합 여부

- 3. 그 밖에 분과위원회 또는 조정·재정·중재위원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8조(전문위원 등) 위원회의 위원장은 건강피해조사, 환경분쟁 조정건에 관한 전문적인 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법 제13조에 따라 전문위원을 위촉하거나 감정인·참고인을 선정할 수 있다.
- 제9조(수수료) ① 위원회에 조정(調整) 등을 신청하는 자가 납부하여야 할 수수료는 「환경분쟁 조정 및 환경피해 구제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과 같다.
 - ② 제1항에 따른 수수료 산정 기준이 되는 조정가액이 신청취지의 변경 등으로 증가한 경우에는 증가 전의 수수료와 증가 후의 수수료의 차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납부하여야 한다.
 -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수수료는 충청북도수입증지·현금·전자화폐 ·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 제10조(공시송달) 위원회는 법 제19조에 따른 공시송달을 직권으로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충청북도 청사 게시판이나 충청북도 인터넷 홈 페이지에 게시하는 방법으로 한다.
- 제11조(수당 등) 위원회에 출석하는 위원 및 관계전문가 등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여비, 그 밖에 업무수행에 필요한 실비를 별표의 기준에 따라 지급할 수 있다.

부 칙

-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2조(종전 조례에 따른 처분·결정 및 진행 중인 행위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종전의 「충청북도 환경분쟁조정에 관한 조례」에 따라 위원회가 행한 환경분쟁 조정과 관련된 처분·결정 및 그 밖의 행 위는 그에 해당하는 이 조례에 따라 행한 처분·결정 및 그 밖의 행위

로 본다.

- 제3조(기능조정에 따른 건강피해조사 청원 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조 례 시행 당시 「충청북도 환경보건 조례」 제12조에 따른 충청북도 환경보건위원회의 건강영향조사 청원의 처리에 관련된 사무는 충청북도 환경분쟁조정피해구제위원회가 승계한다.
 - ② 이 조례 시행 전에 「충청북도 환경보건 조례」에 따른 충청북도 환경보건위원회의 건강영향조사 청원의 처리와 관련한 처분 및 결정은 이조례에 따른 충청북도 환경분쟁조정피해구제위원회의 처분 및 결정으로 본다.
- 제4조(관련 위원회 위원의 임면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충청북도 환경분쟁조정에 관한 조례」에 따라 위촉 또는 임명된 위원의 임기는 이 조례 시행 전날에 만료된 것으로 본다.
- 제5조(이 조례 시행을 위한 준비행위) 관계 공무원은 이 조례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이 조례 시행 전에 위원회 위원 위촉 등 위원회 구성 준비행위를 할 수 있다.

[별표]

위원 및 전문가 수당지급 기준(제11조 관련)

구분	수당	단위	단 가	지급대상
위	출석 수당	일	- 출석수당 . 기본수당 : 100,000원 . 초과수당 : 30,000원	 회의에 참석한 위원 기본수당 : 2시간 이내 초과수당 : 2시간 초과 (1일 1회에 한정하여 지급) * 다만, 4시간 초과 시 초과수당 1회 추가지급
			- 원거리 출석수당 . 50km초과~100km이내 : 30,000원 . 100km초과~200km이내 : 50,000원 . 200km초과 : 70,000원	- 편도거리기준
	안건 검토 수당	건당	- 기본수당 : 50,000원(건당)	- 사건별로 기본수당 지급 (심사보고서 검토 및 교정)
전문가	현지 조사 일당 수당		- 현지조시수당 : 150,000원	- 분쟁의 인과관계 조사 및 규명을 위한 현지조사 수당 (1일 1회에 한정하여 지급)
		일당	- 원거리 출석수당 . 50km초과~100km이내 : 30,000원 . 100km초과~200km이내 : 50,000원 . 200km초과 : 70,000원	- 편도거리기준
	자문 및 의견서 작성 수당	건당	- 자문 및 의견서 작성 : 200,000원	- 분쟁사건 현지조사에 따른 자문 및 의견서 작성 제출

관련법령 발췌

□ 환경분쟁 조정 및 환경피해 구제 등에 관한 법률

- 제4조(환경분쟁조정피해구제위원회의 설치) ① 제5조에 따른 사무를 관장하기 위하여 환경부와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 (이하 "시·도"라 한다)에 각각 환경분쟁조정피해구제위원회를 설치한다. 이 경우 환경부에 두는 환경분쟁조정피해구제위원회는 중앙환경분쟁조정피해구제위원회(이하 "중앙위원회"라 한다)로 하고 시·도에 두는 환경분쟁조정피해구제위원회는 지방환경분쟁조정피해구제위원회(이하 "지방위원회"라 한다)로 한다.
 - ② 제1항에 따른 환경분쟁조정피해구제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그 권한에 속하는 업무를 독립적으로 수행한다.

제5조(위원회의 소관 사무) 위원회의 소관 사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 1. 건강피해조사
- 2. 환경분쟁의 조정.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분쟁의 조정은 해당 목에서 정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 가.「건축법」제2조제1항제8호의 건축으로 인한 일조 방해 및 조망 저해와 관련된 분쟁: 그 건축으로 인한 다른 분쟁과 복합되어 있는 경우
 - 나. 지하수 수위 또는 이동경로의 변화와 관련된 분쟁: 공사 또는 작업(「지하수법」에 따른 지하수의 개발·이용을 위한 공사 또는 작업은 제외한다)으로 인한 경우
 - 다. 하천수위의 변화와 관련된 분쟁:「하천법」제2조제3호에 따른 하천시설 또는「수자원의 조사·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2조제4호에 따른 수자원시설로 인한 경우

- 라. 화학물질 유출·노출과 관련된 환경분쟁:「화학물질관리법」 제2 조제7호에 따른 유해화학물질로 인한 피해 또는 제2조제13호에 따른 화학사고로 인한 경우
- 마. 살생물제품의 노출과 관련된 환경분쟁:「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제20조제1항에 따라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살생물제품 중「제조물 책임법」에 따른 제조물의 결함이 있는 제품에 노출되어 피해(후유증을 포함한다)가 발생한 경우
- 3. 「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석면피해구제법」,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피해 인정, 구제급여 신청 등에 대한 심사, 재심사의 심의・결정・재결 등
- 4. 환경피해와 관련되는 민원의 조사, 분석 및 상담
- 5. 환경피해의 예방 및 해결을 위한 제도와 정책의 연구 및 건의
- 6. 환경피해의 예방 및 구제와 관련된 교육, 홍보, 재정적 · 기술적 지원
- 7. 그 밖에 법령에 따라 위원회의 소관으로 규정된 사항
- 제8조(위원회의 구성 등) ① 중앙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그 중 상임위원은 3명 이내로 한다.
 - ② 지방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그 중 상임위원은 1명을 둘 수 있다.
 - ③ 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 ④ 제9조제1항에 따라 위촉된 위원 중 임기가 끝난 위원은 후임자가 위촉될 때까지 계속 그 직무를 수행한다.
- 제9조(위원회 위원의 임명·위촉) ① 중앙위원회의 위원장을 포함한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환경부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이 경우 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6명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
 - 1. 1급부터 3급까지에 상당하는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

무원으로 3년 이상 재직한 사람

- 2. 판사 · 검사 또는 변호사로 6년 이상 재직한 사람
- 3.「고등교육법」 제2조 각 호의 학교나 연구기관에서 부교수 이상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職)에 재직한 사람
- 4.「의료법」 제77조에 따른 전문의 자격 취득 후 7년 이상 실무에 종사 한 사람
- 5. 「보험업법」 제186조에 따른 손해사정사 자격 취득 후 7년 이상 실무 에 종사한 사람
- 6. 환경부, 국립환경과학원에서 환경보건 업무를 담당하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 7. 환경 관계 업무에 10년 이상 종사한 사람
- 8. 환경보건, 환경분쟁 또는 환경피해구제 등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 ② 중앙위원회의 위원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서 「국가공무원법」제26조의5에 따른 임기제공무원으로 한다.
- ③ 지방위원회의 위원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도지사가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이 경우 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3명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
- ④ 지방위원회의 위원장은 부시장 또는 부지사 중에서 시·도지사가 임명하는 사람으로 한다.
- 제10조(위원장의 직무 등) ①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한다.
 - ② 위원회의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회의 위원 중 위원회의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13조(전문위원 등) ① 위원회의 위원장은 업무를 효율적으로 지원하고 전문적인 조사, 인과관계 규명 및 연구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

- 고 인정할 때에는 위원회에 학계, 사회단체 그 밖에 관련분야의 전문가를 전문위원, 「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 제24조에 따른 환경오염피해조사단,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48조의3에 따른 살생물제품피해조사단으로 둘 수 있다.
- ② 제1항에 따른 전문위원은 위원장이 위촉한다.
- ③ 전문위원의 구성・업무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 규칙으로 정한다.
- 제14조(사무기구 등)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중앙위원회에 사무기구를 두고, 지방위원회에는 사무국을 둘 수 있다.
 - ② 위원회의 사무기구 및 사무국에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분장할 조사 관을 둔다.
 - 1. 사실조사와 인과관계의 규명
 - 2. 환경분쟁 조정, 환경피해 구제급여 지급결정(중앙위원회만 해당한다) 및 건강피해조사 등 관련 연구·개발
 - 3. 그 밖에 위원회 위원장이 지정하는 사항
 - ③ 중앙위원회는 건강피해조사, 분쟁 조정, 구제급여 지급결정 등의 신청을 처리하기 위하여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12조의2에 따른 전자민원창구를 운영할 수 있다.
 -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 중 사무기구 및 사무국의 조직·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과 조례로 정하고, 조사관의 자격·역할 등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16조(분과위원회) ① 위원회는 건강피해조사와 구제급여 지급결정 업무 등을 전문적이고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건강피해조사분과위원회, 환경피해구제분과위원회 및 환경피해구제재심사분과위원회(구제급여 지급결정 업무를 다루는 분과위원회는 중앙위원회만 해당한다)를 두어야하고, 그 밖의 업무에 관하여 필요한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분과위원회(이하 "분과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 ② 분과위원회는 위원 9명 이상 20명 이내로 하여 위원회의 위원장이 분과위원회의 위원장과 협의하여 구성한다. 이 경우 제9조제1항제6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반드시 1명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
- ③ 분과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 위원장이 상임위원 또는 제9조제1항 제6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지명하고, 분과위원회의 위원장은 해당 분과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주재한다.
- ④ 환경피해구제재심사분과위원회는 재심사가 청구된 구제급여 지급신 청 건을 심의·의결하고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라 구성한다. 이 경우 환경피해구제재심사분과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 위원장으로 한다.
- ⑤ 분과위원회의 회의는 구성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⑥ 분과위원회의 의결은 위원회의 의결로 본다.
- ⑦ 그 밖에 분과위원회의 구성・업무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으로 정한다.

비용추계서 첨부제외 사유서(제11조제4항 관련)

○ 첨부제외 관련규정

- 「충청북도 입법에 관한 조례」제11조제4항제1호

이사 유

- 본 조례안은 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기 위해 정비하는 것으로 별도의 비용을 수반하지 않아 비용추계서 작성을 생략함.

○ 작성자

환경산림국 기후대기과장 차 은 녀